



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

1. 지 정 번 호: 제 KC 2015 - 4 호
2. 기 관 명: 주식회사 에이치시티
3. 주 소: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8번길 74
4. 업무수행 범위: 별첨 참조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4년 8월 28일



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



제 KC 2015 - 4 호

분류	품목	세부품목
9.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가. 텔레비전수상기	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
	나. 디스크 플레이어	① 디스크플레이어
	다. 오디오시스템	① 오디오시스템
	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	
	비고 :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.	
10. 정보·통신·사무기기	가. 모니터	① 모니터
		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
		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
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나. 프린터	① 프린터(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.)
		비고: 1.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 2.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
	다. 프로젝터	① 프로젝터
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.
	라. 문서세단기	① 문서세단기
	마. 천공기	① 천공기
	사. 복사기	① 복사기(광원의 정격 출력이 1.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.)
	자.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	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

	차. 디지털TV(스마트 TV, IPTV 등을 말한다.)	① 디지털TV(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.)
	카. 코팅기	① 코팅기(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.)
	타. 노트북컴퓨터	① 노트북컴퓨터
		② 태블릿PC(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cm이상인 것에 한정하며, 음성 통화 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.)
		비고: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	파. 전지 (충전지만 해당한다)	① 전지
		비고: 1.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(리튬계)는 전지(리튬계)로 간주하며,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 2. 교류전원 30V 이하,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
	하. 그 밖에 지정받은 품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	
	비고: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.	
12. 전기 저장장치 구성품	나. 리튬이차전지시스템	① 리튬이차전지시스템(정격용량이 300 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)
비고:		
1. 차량, 철도,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가정, 사무실, 농장,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.		

2. 1차 전지(건전지) 및 2차 전지(충전지)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.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(건전지) 및 2차 전지(충전지)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.